

'12년 제3차 경찰공무원(순경) 채용시험 문제

- 일반공채·전의경 특채·경찰행정학과 특채 -

【형 법】

응시번호:

이름:

- 1. 죄형법정주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에 정해진 '저축을 하는 자'에 사법상 법률효과가 귀속되는 '저축의 주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저축과 관련된 행위를 한 자'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된다.
- ②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그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라고 규정한 청소년보호법 제26조의2 제8호는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여 실질적 죄형법정 주의에 위배된다.
- ③ 자신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결백을 주장하기 위하여 제3자로부터 사건 관련자들이 주고 받은 이메일 출력물을 교부받아 징계위원회에 제출한 행위를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인 이메일의 내용을 '누설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반하는 확장해석이라고 할 수 없다.
- ④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고 규정한 구 약사법 제44조 제1항의 '판매'에 무상으로 의약품을 양도하는 '수여'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

1. [정답] ③

[해설] ③ O. 이메일 출력물 그 자체는 타인의 비밀에 해당하지 않 지만, 이를 징계위원회에 제출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 리 · 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인 이메일의 내용을 '누설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8.4.24. 2006도8644). ① X.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 제1항에 정해진 "저축을 하는 자"에는 사법상 법률효과가 귀속되는 '저축의 주체'가 아니라고 하 더라도, '저축과 관련된 행위를 한 자'도 포함되고, 그러한 자가 금 융기관 임직원들의 유치 활동의 대상이 되어 당해 저축과 관련하여 특별한 이익을 수수하였다면 그 구성요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이러한 해석이 "저축을 하는 자"라는 문언의 의미 한계를 넘어선 해석은 아니므로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된 해석이라고 할 수도 없다 (대법원 2006.3.9. 2003도6733). ② X. 이는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통하여 판단할 수 있고, 구체적인 사건에서는 법관의 보충 적인 해석을 통하여 그 규범내용이 확정될 수 있는 개념이라 할 것 이어서 위 법률조항은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하여 실질적 죄 형법정주의에도 반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3.12.26. 2003도5980). ④ X.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취득 할 수 없다'고 규정한 (구)약사법 제44조 제1항의 '판매'에 무상으로 의약품을 양도하는 '수여'를 포함시키는 해석이 국내에 있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무상으로 의약품을 양도하는 수여행위도 (구)약사 법 제44조 제1항의 '판매'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체계적이고 논리 적인 해석이라 할 것이고, 그와 같은 해석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 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1.10.13. 2011도6287).

- ☞ 경찰,검찰,법원 형법판례때려잡기! 15쪽 참조
- 2.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골프장의 경기보조원이 골프 카트에 승객을 태우고 진행하기 전에 안전 손잡이를 잡도록 고지하지도 않고, 또한 승객들이 안전 손잡이를 잡았는지 확인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만연히 출발하였으며, 각도 70°가 넘는 우로 굽은 길을 속도를 충분히 줄이지 않고 급하게 우회전하여 상해를

- 입게 한 경우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
- ② 시공회사의 상무이사인 현장소장이 현장에서 공사감독을 전담하였고 사장은 그와 같은 감독을 하게 되어 있지 않았더라도, 사장으로서는 그 공사의 진행에 관하여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 회사직원 혹은 고용한 노무자들이 공사시행상의 안전수칙을 위반하여 사고를 저지를 경우에 대비하여 각개의 개별작업에 대하여 세부적인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는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주의의무가 있다.
- ③ 화물차를 주차하고 적재함에 적재된 토마토 상자를 운반 하던 중 적재된 상자 일부가 떨어지면서 지나가던 피해 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정한 '교통사고'에 해당하지 않아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한다.
- ④ 단지 건물의 소유자로서 건물을 비정기적으로 수리하거나 건물의 일부분을 임대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업무상과실 치상죄에 있어서의 '업무'로 보기 어렵다.

2. [정답] ②

[해설] ② X. 시공회사의 상무이사인 현장소장이 현장에서의 공사감 독을 전담하였고 사장은 그와 같은 감독을 하게 되어 있지 않았다 면 사장으로서는 그 공사의 진행에 관하여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 회사직원 혹은 고용한 노무자들이 공사시행상의 안전수 칙을 위반하여 사고를 저지를지 모른다고 하여 이에 대비하여 각개 의 개별작업에 대하여 일일이 세부적인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하 는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주의의무가 있다고 하기 어렵다(대법원 1989.11.24. 89도1618). ① O. 각도 70°가 넘는 우로 굽은 길을 속도 를 충분히 줄이지 않고 급하게 우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골프 카트에서 떨어지게 하여 두개골골절, 지주막하출혈 등의 상해 를 입게 하였다(대법원 2010.7.22. 2010도1911). ③ O.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정한 '교통사고'에 해당하지 않아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 <u>립</u>한다(대법원 2009.7.9. 2009도2390). ④ O. <u>단지 건물의 소유자로서</u> 건물을 비정기적으로 수리하거나 건물의 일부분을 임대하였다는 사 정만으로는 업무상과실치상죄에 있어서의 '업무'로 보기 어렵다(대 법원 2009.5.28. 2009도1040).

- ☞ 경찰,검찰,법원 형법판례때려잡기! 406쪽 참조
- 3. 형법 제21조(정당방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국유토지가 공개 입찰에 의해 매매되고 그 인도집행이 완료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토지의 종전 경작자인 피고인이 파종한 보리가 30cm 이상 성장하였다면 그 보리는 피고인의 소유로서 그가 수확할 권한이 있다 할 것이어서 토지매수자가 토지를 경작하기 위해 소를 이용하여 쟁기질을 하고 성장한 보리를 갈아엎는 행위는 피고인의 재산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라 할 것이므로 이를 막기 위해 그 경작을 못하도록 소 앞을 가로막고 쟁기를 잡아당기는 등의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 ②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방을 비워주지 못하겠다고 억지를 쓰며 폭언을 하자 임대인의 며느리가 홧김에 그 방의 창문을 쇠스랑으로 부수자, 이에 격분하여 임차인이 배척 (속칭 빠루)을 들고 휘둘러 구경꾼인 마을주민에게 상해를 입힌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③ 거주지 연립주택 내 도로의 차량통행 문제로 시비가 되어

차량의 진행을 제지하려고 길을 막은 아버지 앞으로 운전자가 차를 그대로 진행시키자, 이를 막으려고 운전자의 머리털을 잡아당겨 상해를 입힌 아들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④ 치한이 심야에 혼자 귀가 중인 부녀자에게 달려들어 양팔을 붙잡고 어두운 골목길로 끌고 들어가 하체를 더듬으며 억지로 키스를 하려 하자, 그 부녀자가 치한의 혀를 깨물어 0.5cm 절단한 경우에는 과잉방위에 해당한다.

3. [정답] ④

[해설] ④ X. 丙여의 범행은 자기의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려고 한 행위로서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목적 및 수단, 행위자의 의사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u>위법성이 결여된행위이다(대법원 1989.8.8. 89도358)</u>. ① O. 피고인의 재산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라 할 것이므로 이를 막기 위하여 그 경작을 못하도록 소 앞을 가로막고 쟁기를 잡아당기는 등의 <u>피고인의 행위는정당방위에 해당된다(대법원 1977.5.24. 76도3460)</u>. ② O. 침해행위에서 벗어난 후에 분을 풀려는 목적에서 나온 공격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6.4.9. 96도241). ③ O. 부의 생명,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대법원 1986.10.14. 86도1091).

☞ 경찰,검찰,법원 형법판례때려잡기! 161쪽 참조

4. 다음 중 형법상 미수범 처벌규정이 있는 범죄는 모두 몇 개인가?

① 불법체		의무유기죄	© 사인위조죄
② 강제집		도주죄	⑪ 진화방해죄
① 1개	② 27H	③ 3개	④ 4개

4. [정답] ③

[해설] ③ ①ⓒ⑩의 3개가 미수범처벌규정이 있고, ⓒ②⑪의 경우 미수가 없다.

- ☞ 경찰,검찰,법원 형법판례때려잡기! 228쪽 참조
- ★ 조문-이론문제
- 5. 예비·음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예비·음모 후 자의로 실행의 착수를 포기하였더라도 중지범 규정을 유추적용할 수 없다.
- ② 폭발물사용죄와 간수자도주원조죄는 예비·음모를 처벌한다.
- ③ 정범이 실행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예비단계에 그친 경우, 이에 가공하는 행위가 예비의 공동정범이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5. [정답] ④

[해설] ④ X. 인질강요죄는 예비, 음모의 처벌규정이 없다.

① O. 실행의 착수가 있기 전인 예비음모의 행위를 처벌하는 경우

에 있어서 <u>중지범의 관념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u>대법원 1999.4.9. 99도424). ② O. "살국강음기통방도내폭"의 경우 예비음모를 처벌한 다. 제120조 (폭발물사용죄 예비, 음모, 선동)

제150조 (도주원조죄 예비, 음모) ③ O. 정범이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예비의 단계에 그친 경우에는 이에 가공하는 행위가 <u>예비의 공동정범이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범의 성립을 부정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1976.5.25. 75도1549).</u>

☞ 경찰,검찰,법원 형법판례때려잡기! 250쪽 참조

- 6. 다음 형법상 형의 감경·면제사유 중 임의적 감면사유는 모두 몇 개인가?
 - → 장애미수(제25조 제2항)
- \(\) 농아자(제11조)
- © 외국에서 받은 형의 집행(제7조) ② 중지미수(제26조)
- 미 심신미약자(제10조 제2항)
- 🛈 과잉자구행위(제23조 제2항)

① 17H ② 27H

③ 3개 ④ 4개

6. [정답] ②

[해설] ② 🗅 🖽의 2개이다.

□ 제25조 (미수범)②미수범의 형은 기수범보다 <u>감경할 수 있다</u>. □ 제11조 (농아자) 농아자의 행위는 <u>형을 감경한다</u>. □ 제7조 (외국에서 받은 형의 집행) 범죄에 의하여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u>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u>. ② 제26조 (중지범) 범인이 자의로 실행에 착수한 행위를 중지하거나그 행위로 인한 결과의 발생을 방지한 때에는 <u>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u>. □ 제10조 (심신장애자) ②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미약한 자의 행위는 <u>형을 감경한다</u>. ⑪ 제23조 (자구행위) ②전항의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정황에 의하여 <u>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u> 수 있다.

★ 조문-이론문제

- 7. 공범과 신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의사 甲이 의사가 아닌 乙의 병원 개설행위에 공모하여 가공한 경우, 의료법위반죄의 공동정범에 해당된다.
- ②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각 기부행위 제한위반의 죄와 관련하여, 각 기부행위의 주체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자가 기부행위의 주체자 등과 공모하여 기부행위를 한 경우, 기부행위 주체자에 해당하는 법조 위반의 공동 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 ③ 비신분자가 신분자와 공동으로 업무상 배임행위를 한 경우, 비신분자에게도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고 처벌에 있어 단순배임죄로 처벌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 ④ 형법 제33조 소정의 이른바 신분관계라 함은 남녀의 성별, 내·외국인의 구별, 친족관계, 공무원인 자격과 같은 관계 뿐만 아니라 널리 일정한 범죄행위에 관련된 범인의 인적관계인 특수한 지위 또는 상태를 지칭하는 것이다.

7. [정답] ②

[해설] ② X.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의 각 법조항을 구분하여 기부행위의 주체 및 그 주체에 따라 기부행위제한의 요건을 각기 달리 규정한 취지는 각 기부행위의 주체자에 대하여 그 신분에 따라 각 해당법조로 처벌하려는 것이므로, <u>각 기부행위의 주체로</u>인정되지 아니하는 자가 기부행위의 주체자 등과 공모하여 기부행

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신분에 따라 각 해당법조로 처벌하여야지 기부행위 주체자에 해당하는 법조 위반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8.3.13. 2007도9507). ① O. 의료인이 의료인이나 의료법인 아닌 자의 의료기관 개설행위에 공모하여 가공하면 의료법 제66조 제3호, 제30조 제2항 위반죄의 공동정범에 해당된다(대법원 2001.11.30. 2001도2015). ③ O. 그와 같은 신분관계가 없는 자가그러한 신분관계가 있는 자와 공모하여 업무상배임죄를 저질렀다면그러한 신분관계가 없는 자에 대하여는 형법 제33조 단서에 의하여단순배임죄에 정한 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9.4.27. 99도883). ④ O. 형법 제33조 소정의 이른바 신분관계라 함은 남녀의 성별, 내·외국인의 구별, 친족관계, 공무원인 자격과 같은 관계뿐만 아니라 널리 일정한 범죄행위에 관련된 범인의 인적관계인 특수한 지위 또는 상태를 지칭하는 것이다(대법원 1994.12.23. 93도1002).

☞ 경찰,검찰,법원 형법판례때려잡기! 298쪽 참조

- 8.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특별법은 고려하지 말 것)
- ① 중체포감금죄는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험을 발생시킬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결과적 가중범이다.
- ② 미성년자약취·유인죄, 부녀매매죄, 체포·감금죄, 인질강요죄, 인질상해죄에는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로 풀어준 때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
- ③ 주거침입죄는 미수범을 처벌하지 않는다.
- ④ 중체포감금죄는 상습범 처벌규정이 있다.

8. [정답] ④

[해설] ④ 제279조 (체포, 감금죄 상습범) 상습으로 제276조 또는 제 277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전조의 예에 의한다.

① 제277조 (중체포, 중감금, 존속중체포, 존속중감금)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로 구체적위험범X, 부진정 결과적가중범X ② 체포감금죄와 인질강 도죄는 해방감경규정이 없다.③ 제322조 (주거침입죄 미수범)

☞ 경찰,검찰,법원 형법판례때려잡기! 420쪽 참조

★ 조문-이론문제

- 9. 약취와 유인의 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기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특별법은 고려하지 말 것)
- ① 약취의 경우에 폭행·협박의 정도는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한다.
- ② 유인의 수단으로서 유혹이라 함은 기망의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하나 감언이설로써 상대방을 현혹시켜 판단의 적정을 그르치게 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그 유혹의 내용이 허위일 것을 요하지는 않는다.
- ③ 미성년자를 유인한 자가 계속하여 미성년자를 불법하게 감금하였을 때에는 미성년자유인죄 이외에 감금죄가 별도로 성립한다.
- ④ 친권자가 외조부가 맡아서 양육해 오던 미성년인 자(子)를 자(子)의 의사에 반하여 사실상 자신의 지배하에 옮긴 경우, 미성년자약취·유인죄가 성립한다.

9. [정답] ①

[해설] ① X.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그 폭행 또는 협박의 정도는 상대방을 실력적 지배하에 둘 수 있을 정도이 면 족하고 <u>반드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는 아니한다(</u>대법원 1991.8.13. 91도1184).

② O. 유혹이라 함은 <u>반드시 그 유혹의 내용이 허위일 것을 요하지는 않는다(</u>대법원 1996.2.27. 95도2980). ③ O. 미성년자를 유인한 자가 계속하여 미성년자를 불법하게 감금하였을 때에는 <u>미성년자유인</u> <u>죄 이외에 감금죄가 별도로 성립</u>한다(대법원 1998.5.26. 98도1036).

④ O. 외조부가 맡아서 양육해 오던 미성년인 자(子)를 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실상 자신의 지배하에 옮긴 친권자에 대하여 <u>미성년자 약</u>취·유인죄를 인정한다(대법원 2008.1.31. 2007도8011).

☞ 경찰,검찰,법원 형법판례때려잡기! 429쪽 참조

- 10. 강간과 추행의 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u>않은</u> 것끼리 묶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야간에 강간을 목적으로 피해자의 집에 담을 넘어 침입한 후, 안방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면서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야'하고 비명을 지르는 바람에 도망한 경우라면 강간죄의 장애미수에 해당한다.
- ① 여종업원들이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사장과의 친분관계를 내세워 함께 술을 마시지 않을 경우 신분상 불이익을 가할 것처럼 협박하여 이른바 '러브샷'의 방법으로 술을 마시게 한 것은 강제추행죄에 해당한다.
- © 당사자 사이에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을 뿐만 아니라 더이상 혼인관계를 지속할 의사가 없고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어 실질적인 부부관계가 인정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법률상의 배우자인 처는 강간 죄의 객체가 되지 않는다.
- ② 형법 제305조에 규정된 13세 미만 부녀에 대한 의제강간· 추행죄는 그 성립에 있어 위계 또는 위력이나 폭행 또는 협박의 방법에 의함을 요하지 아니하며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하여도 성립하는 것이다.
- ① 13세 미만 부녀에 대한 의제강간·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는 고의만으로 충분하고, 그 외에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1 705

270

(3) (L)(E)(Z)

(4) (1)

10. [정답] ②

[해설] ② つ©이 옳지 않다.

① X.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면서 간음을 기도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강간의 수단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개시하였다고 하기는 어렵다(대법원 1990.5.25. 90도607). ② O. 장제추행죄를 인정한다(대법원 2008.3.13. 2007도10050). ② X. 적어도 당사자 사이에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을 뿐만 아니라 더 이상 혼인관계를 지속할 의사가 없고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어 실질적인 부부관계가 인정될 수없는 상태에 이르렀다면, 법률상의 배우자인 처도 강간죄의 객체가된다(대법원 2009.2.12. 2008도8601). ② O.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하여도 성립하는 것이다(대법원 1982.10.12. 82도2183). ◎ O. 그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는 고의만으로 충분하고, 그 외에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1.13. 2005도6791).

☞ 경찰,검찰,법원 형법판례때려잡기! 432쪽 참조

- 11. 경매·입찰방해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담합행위가 입찰방해죄로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입찰 참가자 전원과의 사이에 담합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입찰참가자들 중 일부와의 사이에만 담합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다.
- ② 유찰방지를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이익을 해치지 않았더라도 실질적으로 단독입찰하면서 경쟁입찰인 것처럼 가장하였 다면, 그 입찰 가격으로 낙찰하게 한 점에서 경쟁입찰 방법을 해한 것이므로 입찰의 공정을 해친 것이다.

- ③ 입찰자 일부와 담합이 있고 담합금이 수수되었다 하더라도 타입찰자와는 담합이 이루어지지 않아, 입찰시행자의 이익을 해함이 없이 자유로운 경쟁을 한 것과 동일한 결과로 되는 경우 입찰의 공정을 해할 위험성이 없다.
- ④ 법원경매업무를 담당하는 집행관의 구체적인 직무집행을 저지하거나 현실적으로 곤란하게 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않고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정도의 범죄행위라면 위계에 의한공무집행방해죄에만 해당될 뿐 경매·입찰방해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11. [정답] ④

[해설] ④ X. 범죄행위가 법원경매업무를 담당하는 집행관의 구체적 인 직무집행을 저지하거나 현실적으로 곤란하게 하는 데까지는 이 르지 않고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정도의 행위라면 <u>형법 제315조의</u> 경매·입찰방해죄에만 해당될 뿐, 형법 제137조의 위계에 의한 공무 집행방해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대법원 2000.3.24. 2000도102). ① O. 반드시 입찰참가자 전원 사이에 담합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입찰참가자들 중 일부 사이에만 담합이 이루어진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이상 입찰 방해죄는 성립한다(대법원 2009.5.14. 2008도11361). ② O. 실질적으 로는 단독입찰을 하면서 경쟁입찰인 것같이 가장하였다면 그 입찰 가격으로써 낙찰하게 한 점에서 경쟁입찰의 방법을 해한 것이 되어 입찰의 공정을 해한 것으로 되었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3.9.26. 2002도3924). ③ O. 그들을 형식적으로 입찰에 참가하게 하여 피고 인의 실질적인 단독입찰을 경쟁입찰로 가장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결국은 자유경쟁을 한 것과 동일한 결과로 되어 위 (丙)회사가 부정 한 이익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입찰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83.1.18. 81도824).

☞ 경찰,검찰,법원 형법판례때려잡기! 479쪽 참조

- 12. 공갈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공갈죄에 있어서 공갈의 상대방은 재산상의 피해자와 동일함을 요하지 아니하며, 공갈의 목적이 된 재물 및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처분할 수 있는 사실상 또는 법률상의 권한을 갖거나 그러한 지위에 있음을 요하는 것도 아니다.
- ② 토지매도인이 그 매매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매수인을 상대로 하여 당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위 대금을 변제받지 못하면 위 소송을 취하하지 아니하고 예고등기도 말소하지 않겠다는 취지를 알린 경우, 공갈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있다.
- ③ 공갈죄는 폭행 또는 협박과 같은 공갈행위로 인하여 피공갈자가 재산상 이익을 공여하는 처분행위가 있어야 성립하며, 처분행위는 반드시 작위에 한하지 아니하고, 피공갈자가 외포심을 일으켜 묵인하고 있는 동안에 공갈자가 직접 재산상의 이익을 탈취하는 부작위로도 가능하다.
- ④ 부동산에 대한 공갈죄는 그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은 때에 기수가 된다.

12. [정답] ③

[해설] ③ O. 그러한 처분행위는 반드시 작위에 한하지 아니하고 부작위로도 족하여서, 피공갈자가 외포심을 일으켜 묵인하고 있는 동안에 공갈자가 직접 재산상의 이익을 탈취한 경우에도 공갈죄가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12.1.27. 2011도16044). ① X. 공갈죄에 있어서 공갈의 상대방은 재산상의 피해자와 동일함을 요하지는 아니하나, 공갈의 목적이 된 재물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처분할 수 있는

사실상 또는 법률상의 권한을 갖거나 그러한 지위에 있음을 요한다 (대법원 2005.9.29. 2005도4738). ② X. 토지매도인이 그 매매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매수인을 상대로 하여 당해토지에 관한 소유권이 전등기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위 대금을 변제받지 못하면 위 소송을 취하하지 아니하고 예고등기도 말소하지 않겠다는 취지를 알렸다고 하여 이를 지목하여 <u>공갈행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u>대법원 1989.2.28. 87도690). ④ X.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 받은 때에 기수로 되어 그 범행이 완료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2.9.14. 92도1506).

☞ 경찰,검찰,법원 형법판례때려잡기! 584쪽 참조

- 13. 횡령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부동산의 명의수탁자가 신탁자의 승낙 없이 甲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했다가 후에 그 말소등기를 신청함과 동시에 乙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함에 따라 甲 명의의 근저당권말소등기와 乙 명의의 소유권이전 등기가 순차 경료된 경우, 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행위는 별도의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 ② 횡령죄에서 말하는 보관자의 지위는 부동산의 경우, 점유를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의 유무를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하므로 원인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의 명의자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③ 미등기건물의 관리를 위임받아 보관하고 있는 자는 등기 부상 명의인이 아니므로 위탁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미등기 건물을 현실로 관리·지배하더라도 위 미등기건물의 보관 자라고 할 수 없다.
- ④ 학교법인이 아닌 사인(私人)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에 있어서 학생 등이 납부한 수업료 등으로 조성된 교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학교의 설치·경영자의 소유에 속하므로, 피고인이 학교의 설치·경영자와 공모하여 학생 등이 납부한 수업료 등을 교비회계 아닌 다른 회계에 임의로 사용하였더라도 사립학교법 위반죄 외에 따로 (학생이나학부모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13. [정답] ③

[해설] ③ O. 부동산의 보관은 원칙으로 등기부상의 소유명의인에 대하여 인정되지만 등기부상의 명의인이 아니라도 소유자의 위임에 의거해서 실제로 타인의 부동산을 관리, 지배하면 부동산의 보관자라 할 수 있고, 미등기건물에 대하여는 위탁관계에 의하여 현실로 부동산을 관리, 지배하는 자가 보관자라고 할 수 있다(대법원 1993.3.9. 92도2999). ① X. 횡령물의 처분행위로서 새로운 법익의 침해를 수반하지 않는 이른바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여 별도의 횡령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0.3.24. 2000도310). ② X. 원인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의 명의자로서 그 부동산을 법률상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은 자는 횡령죄의 주체인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89.2.28. 88도1368). ④ X. 피고인이 조과 공모하여 이를 임의로 사용하였더라도 사립학교법 위반죄가 성립하는 것 외에 따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12.5.10. 2011도12408).

☞ 경찰,검찰,법원 형법판례때려잡기! 591쪽 참조

14. 형법상 배임수재죄 및 배임증재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 (○)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배임수증죄에 있어서 '부정한 청탁'이라 함은 청탁이 사회상규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말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청탁의 내용과 이와 관련되어 교부받 거나 공여한 재물의 액수, 형식, 보호법익인 사무처리자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하며 그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임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 ① 배임수재죄에서 말하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이라 함은 현실적인 취득만을 의미하므로 단순한 요구 또는 약속만을 한 경우에는 배임수재죄의 기수로 처벌하지 못한다.
- ©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되고 청탁에 따른 일정한 행위가 현실적으로 행하여질 것을 요하지 않는다.
- ②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선처를 바란다는 청탁을 받고 그 사례로 금품을 수수한 경우 배임수재죄의 '부정한 청탁'에 해당된다.
- $2 \ominus (0), \ominus (X), \ominus (0), \ominus (X)$
- ③ ¬(X), □(O), □(O), □(O)
- ④ ¬(0), □(0), □(0), □(X)

14. [정답] ④

[해설] 1 1(O), 1(O), 2(X)

① O. 그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임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6.10.11. 95도2090). ② O. 배임수재죄에서 말하는 '재산상의 이익의 취득'이라 함은 현실적인 취득만을 의미하므로 단순한 요구 또는약속만을 한 경우에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9.1.29. 98도4182). ② O. 형법 제357조 제1항의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처리하는 자의 청렴성을 보호하려는 것으로서 타인의 사무를처리하는 자의 청렴성을 보호하려는 것으로서 타인의 사무를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되고 청탁에 따른 일정한 행위가 현실적으로 행하여질 것을 요하지 않는다(대법원 1987.11.24. 87도1560). ② X. 따라서 이러한 청탁의 사례로 금품을 수수한 것은 배임증재또는 배임수재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82.9.28. 82도1656).

☞ 경찰,검찰,법원 형법판례때려잡기! 654쪽 참조

- 15. 유가증권에 관한 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은행을 통하여 지급이 이루어지는 약속어음의 발행인이 그 발행을 위하여 은행에 신고된 것이 아닌 발행인의 다른 인장을 날인하였다면 허위유가증권작성죄가 성립한다.
- © 약속어음 배서인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배서인의 인적 동일성을 해하는 경우가 아닌 한 허위유가증권작성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 © 액면이 백지로 된 약속어음이 이미 타인에 의하여 위조된 것임을 알고 이를 구입하여 행사의 목적으로 백지인 액면 란에 금액을 기입하여 그 위조어음을 완성하였더라도 이러한 행위는 별개의 유가증권위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 ② 위조유가증권의 교부자와 피교부자가 서로 유가증권위조를 공모하였거나 위조유가증권을 타에 행사하여 그 이익을 나누어 가질 것을 공모한 공범의 관계에 있다면, 그들 사이의 위조유가증권 교부행위는 그들 이외의 자에게 행사함으로써 범죄를 실현하기 위한 전 단계의 행위에 불과한 것으로서 위조유가증권은 아직 범인들의 수중에 있다고 볼 것이지 행사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 © 이미 타인에 의하여 위조된 약속어음의 기재사항을 권한 없이 변경한 경우 유가증권변조죄가 성립한다.
- ① 1개
- ② **2**개
- ③ 3개
- 4 47H

15. [정답] ③

[해설] ③ 사례에서 틀린 것은 ①CD의 3개이다.

① X. 그것이 발행인의 인장인 이상 그 어음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허위유가증권작성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0.5.30. 2000도883). ⓒ O. 약속어음상의 권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은 그것을 허위로 기재하더라도 형법 제216조 소정의 허위유가증권작성죄에 해당되지 않는다(대법원 1986.6.24. 84도 547). ⓒ X. 백지어음 형태의 위조행위와는 별개의 유가증권위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1982.6.22. 82도677). ⓒ O. 그들 사이의 위조유가증권 교부행위는 그들 이외의 자에게 행사함으로써 범죄를 실현하기 위한 전단계의 행위에 불과한 것으로서 위조유가증권은 아직범인들의 수중에 있다고 볼 것이지 행사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0.12.9. 2010도12553). ⑫ X. 이미 타인에 의하여 위조된 약속어음의 기재사항을 권한 없이 변경하였다고 하더라도 유가증권변조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6.1.26. 2005도4764).

☞ 경찰,검찰,법원 형법판례때려잡기! 725쪽 참조

- 16. 다음 중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가 성립하지 <u>않는</u>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적법하게 취득된 토지인 것으로 알고 실체관계에 부합 하게 하기 위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경우
- ① 공증인에게 허위의 채권을 양도한다는 취지의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한 경우
- ©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의 토지에 관하여 실제로는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서도 처음부터 토지거래허가를 잠탈하려는 목적으로 등기원인을 '증여'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 ② 등기명의인이 부동산의 진실한 소유자가 아니어서 그 명의의 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알면서 그로부터 가장매수하고 이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 ① 17H ② 27H ③ 37H ④ 47H

16. [정답] ③

[해설] ③ ① ② ② 3개가 성립하지 않는다.

① X. 피고인이 자신의 부친이 적법하게 취득한 토지인 것으로 알고 실체관계에 부합하게 하기 위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경우 등기 당시 부실기재의 점에 대한 고의 내지는 인식이 없었다고보아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 및 동 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1996.4.26. 95도2468). ① X. 공증인에게 그러한 채권양도의 법률행위에 관한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공정증서가 증명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고 볼 것은 아니고, 따라서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4.1.27. 2001도5414). ⓒ O.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11.30. 2005도9922). ② X. 등기의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원인이 무효인 등기로서 피고인이 그 점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바로 피고인이 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1.9.24. 91도1164).

☞ 경찰,검찰,법원 형법판례때려잡기! 752쪽 참조

- 17. 간통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부부가 자유의사로 협의이혼신고에 서명날인한 경우 간통죄의 종용에 해당한다.
- ② 유부남과 유부녀가 서로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 간음한 경우 이중간통으로서 간통죄 2개의 상상적 경합이다.
- ③ 배우자의 간통사실을 알고 난 후 그 상대방으로부터 배우자를 더이상 만나지 않겠다는 합의각서를 받은 경우에는 간통의

유서에 해당한다.

④ 남편이 간통을 부인하자 처가 '용서해 줄 테니 자백하라'고 하여 간통을 시인하는 자백서를 받은 경우 간통죄의 유서에 해당한다.

17. [정답] ④ 배우자의 객관적인 의사표시, 즉 "용서해 줄테니 자백 하라"고 말한 것만으로는 간통을 유서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1991.11.26. 91도2049).

[해설] ④ X. 부부가 자유의사로 협의이혼신고서에 서명날인한 경우에는 본조 제2항 단서 소정의 "간통을 종용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1969.2.25. 68도859). ① O. 이른바 <u>이중간통의 경우에는 쌍방 모두 위 전문과 후문에 해당하게 되고, 이는 처분상의 일죄인 상상적경합의 관계에 있는 것인 바, 검사가 이와 같이 상상적경합의 관계에 있다(대법원 1990.1.25. 89도1317). ② O. 배우자를 더 이상 만나지 않겠다는 합의각서를 받은 경우, 간통의 유서에 해당한다(대법원 1999.8.24. 99도2149). ③ O. 간통의 유서에 해당한다.</u>

☞ 경찰,검찰,법원 형법판례때려잡기! 781쪽 참조

- 18. 도박개장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피고인이 가맹점을 모집하여 인터넷 도박게임이 가능하도록 시설 등을 설치하고 도박게임 프로그램을 가동하던 중, 문제가 발생하여 더이상의 영업으로 나아가지 못한 경우, 실제로 이용자들이 도박게임 사이트에 접속하여 도박을 한 사실이 없다면 도박개장죄는 기수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
- ② 본 죄는 영리의 목적을 필요로 하는 이른바 목적범이다.
- ③ 영리의 목적이란 도박개장의 대가로 불법한 재산상의 이익을 얻으려는 의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반드시 도박개장의 직 접적 대가가 아니라 도박개장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얻게 될 이익을 위한 경우에도 영리의 목적이 인정되고, 또한 현실적으로 그 이익을 얻었을 것을 요하지는 않는다.
- ④ 유료낚시터를 운영하는 사람이 입장료 명목으로 요금을 받은 후 물고기에 부착된 시상번호에 따라 경품을 지급한 경우 도박개장죄에 해당한다.

18. [정답] ①

[해설] ① X. 피고인이 단순히 가맹점만을 모집한 상태에서 도박게임 프로그램을 시험가동한 정도에 그친 것이 아니라, 가맹점을 모집하여 인터넷 도박게임이 가능하도록 시설 등을 설치하고 도박게임프로그램을 가동하던 중 문제가 발생하여 더 이상의 영업으로 나아가지 못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면 이로써 도박개장죄는 이미 '기수'에 이르렀다(대법원 2009.12.10. 2008도5282). ② O. 제247조 (도박개장)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O. 반드시 도박개장의 직접적 대가가 아니라 도박개장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얻게 될 이익을 위한경우에도 영리의 목적이 인정되고, 또한 현실적으로 그 이익을 얻었을 것을 요하지는 않는다(대법원 2009.2.26. 2008도10582). ④ O. 도박개장죄를 인정한다(대법원 2009.2.26. 2008도10582).

☞ 경찰,검찰,법원 형법판례때려잡기! 792쪽 참조

- 19. 뇌물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뇌물공여죄의 성립에 반드시 상대방 측의 뇌물수수죄가 성립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 ② 뇌물죄에서 뇌물의 내용인 이익이라 함은 금전, 물품 기타의 재산적 이익뿐만 아니라 사람의 수요·욕망을 충족시키기에 족한 일체의 유형·무형의 이익을 포함한다고 해석되고, 투기적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얻는 것도 이에 해당한다.

- ③ 공무원이 직접 뇌물을 받지 아니하고 증뢰자로 하여금 다른 사람에게 뇌물을 공여하도록 한 경우라도 다른 사람이 공무원의 사자 또는 대리인으로서 뇌물을 받은 경우 등과 같이 사회통념상 다른 사람이 뇌물을 받은 것을 공무원이 직접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는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형법 제129조 제1항의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
- ④ 뇌물을 수수한 자가 공동수수자가 아닌 교사범 또는 종범에게 뇌물 중 일부를 사례금 등의 명목으로 교부한 경우, 사례금 상당액을 공제한 금액을 뇌물수수자에게서 추징하여야 한다.

19. [정답] ④

[해설] ④ X. 뇌물을 수수한 자가 공동수수자가 아닌 교사범 또는 종범에게 뇌물 중 일부를 사례금 등의 명목으로 교부하였다면 이는 뇌물을 수수하는 데 따르는 부수적 비용의 지출 또는 뇌물의 소비행위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u>뇌물수수자에게서 수뢰액 전부를 추징하여야</u> 한다(대법원 2011.11.24. 2011도9585). ① O. 반드시 상대방측에서 뇌물수수죄가 성립하여야 함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2.24. 2005도4737). ② O. 투기적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얻는 것도 이에 해당한다(대법원 2002.11.26. 2002도3539). ③ O. 사회통념상그 다른 사람이 뇌물을 받은 것을 공무원이 직접 받은 것과 같이평가할 수 있는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형법 제129조 제1항의 단순수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98.9.22. 98도1234).

☞ 경찰,검찰,법원 형법판례때려잡기! 822쪽 참조

- 20. 무고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고소당한 범죄가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에, 고소를 당한 사람이 자신을 고소한 사람에 대하여 '고소당한 죄의 혐의가 없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고소인이 자신을 무고한 것에 해당하므로 고소인을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면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무고죄의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 ② 피고인이 위조수표에 대한 부정수표단속법 제7조의 고발 의무가 있는 은행원을 도구로 이용하여 수사기관에 고발을 하게하고, 이어 수사기관에 대하여 특정인을 위조자로 지목한 경우, 이는 사법경찰관의 질문에 답변으로 한 것이라 할지 라도 자발성이 인정되어 무고죄가 성립한다.
- ③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신고하였지만 신고된 범죄사실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음이 신고내용 자체에 의하여 분명한 경우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④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

20. [정답] ①

[해설] ① X. 고소당한 범죄가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에, 고소를 당한 사람이 고소인에 대하여 '고소당한 죄의 혐의가 없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고소인이 자신을 무고한 것에 해당하므로 고소인을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면 설사 그것이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방어권의 행사를 벗어난 것으로서 고소인을 무고한다는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7.3.15. 2006도9453). ② O. 이는 피고인이 위조 수표에 대한 부정수표단속법 제7조의 고발의무가 있는 은행원을 도구로 이용하여 수사기관에고발을 하게하고 이어 수사기관에 대하여 특정인을 위조자로 지목함으로써 자발적으로 수사기관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12.22. 2005도3203). ③ O. 형사처분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므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

원 1994.2.8. 93도3445). ④ O.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 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 위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6.5.25. 2005도4642).

☞ 경찰,검찰,법원 형법판례때려잡기! 888쪽 참조

윤황채 2013년 1차시험대비 형법판례특강 형법판례때려잡기특강

2012년 11월 10일 (토)

- 2012년 1차, 2차시험에서 판례의 98%와
- 2. 직접 교재로 확인가능 합니다!!!
- 3. 판례를 알면 형 고 합격이 보인다! 형법이 보이고, 고득점이 보이
- 4. 처음 형법을 공부해서 기초가 부족한 학생도 쉽게 판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2013년 1차대비 형법심화문제특강 형법AllPass 심화문제때려잡기특강 2012년 12월 15일(토) 오전 9시 개강

- 1. 2012년 2차시험에서 심화문제 완벽대비! 2. 총론2회, 각론2회 진도별문제풀이!!!
- 그리고 종합문제풀이 1회(총5회) 심화문제를 풀면 형법문제가 보여 문제가 보이고, 고득점
- 이 보이고 합격이 보인다! 4. 판례를 공부해서 문제에 적용 시키고 순발력 키워야 합니다!

2013년 1차시험대비 형법총정리마무리특강 형법조문-형법이론 및 학설-핵심판례 2013년 1월 예정

- 2013년 1월 예정 1. 형법 법조문 완전정복! 2. 형법이론 및 학설 마무리정리!! 3. 출제가능 핵심파례 ㅇ아끄크!

- 3. 출제가능 핵심판례 요약정리! 4. 2012년 최신판례 완벽정리! 5. 형법 쪽집게 암기사항 마무리!

*** 윤황채 형사법 수험서 ***

1. 형법총론, 형법각론[도서출판 예응 2013. 제4판]

2.PASS핵심경찰형법[도서출판배움2013.제8판]

- 3. 형법, 형소법용어해설집[도서출판 배움 2011. 초판]
- 4. PASS 심화형법[총론,각론][국민고시각 2013. 제3판]
- 5. 형법조문과판례[도서출판예응2010.초판]
- 6. 객관식경찰형법[총론, 각론][도서출판배움2012.제2판]
- 7. 법1 검2 경3 핵심형법[도서출판 배움 2010. 제3판]
- 8.법1검2경3형법강의노트[도서출판배움2013.제4판]
- 9. 경찰검찰법원형법판례때려잡기![도서출판배움2013. 제4판]

특강문의는

서울 국가경찰학원 02-6272-0022 대구 국민경찰학원 053-253-0112

http://cafe.naver.com/gosicore.cafe

http://cafe.daum.net/new-police

http://cafe.daum.net/SungjinAcademy

gosicore@naver.com

윤황채 형법고득점 7단계공부전략

1단계 : 교과서 공부(P如99 핵심형법)

1순환: 기초 법률용어공부(형법적응하기) 2순환 : 형법 기본학습(형법내용보기) 3순환 : 형법 심화학습(형법깊이보기) 2단계: 기초형법 문제풀이(기본문제)

3단계 : 판례공부(판례때려자기)

4단계 : 학설-이론-법조문 심화학습(형법총정시)

5단계: 형법기출문제풀이

1순환 : 경찰기출문제(순경,경찰간부,경찰승진)

2순환 : 기타기출문제(검찰직,법원직,법원고시,사법시험)

6단계 : 형법기출지문정리(기출지문OX정리) 7단계 : All Pass 형법문제풀이

1순환 : 진도별 문제풀**이**(6회)

2순환 : 심화문제풀이(총론1회, 각론1회)

3순환 : 종합문제풀이(1회)